

제 1404 호
1988.3.2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김 종 대
편집인 : 관 보 관 서 정 화
전화 : 731-6111~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산동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- ◎ 공한시행
서울특별시공보물제작심의지침시달 3
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6
- ◎ 문 령
제 554 호 : 서울특별시공무원국회의원선거심사위원회운영규정 7
- ◎ 고 시
제 213 호 : 민영수택건설사업계획승인 15
제 221 호 : 광진구에 방주사철사 15

(이면계속)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988

㉔	구 고 시	
	노원구제 6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	16
㉕	공 고	
	제 22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	16
	제 228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	19
㉖	구 공 고	
	구로구제 2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에따른공람	19
	노원구제 68 호 : 편입신고	21
㉗	사 령	

공 문 시 행

"관 인 생 략"

서 울 특 별 시

공보 35210-79

(731-6111)

1988. 3. 28.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서울특별시 홍보물제작심의지침 시달

1. 서울특별시 홍보물제작심의지침 (공보 1740-621, '82.12.24)로와
 환전인.

2. 시정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문경하고
 있는 "서울특별시 홍보물제작심의지침"을 현청과 같이 조건하여 시달하니,
 각종 홍보물 제작시 이지침에 따라 "서울특별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"의
 심의를 필한 후 제작토록 할 것.

첨 부 : 조정내용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공 보 판 전결)

수신처 : 서과 1-68, 서구 1-22, 서사 1-58.

○ 조정내용: • 심의위원 조정 (현행 11명 - 7명 조정) • 간사인실 - 홍보제회담당관		
현	정	조 정 사 용
가. 심의 대상 1) 홍보간행물: 화보, 책자 펌프켓, 리프렛 등 2) 시집과홍보물: 영화, 스라 이드 등	가. 과 동	
나. 심의 내용 1) 홍보내용의 중복여부 2) 유사홍보물의 통합조정 3) 홍보간행물의 배포선 적 부 및 방법	나. 과 동	
다. 대상기관 본청 전 실과 (소방본부 포함) 및 직할사업소	다. 과 동	
다. 시행시기: 1983.1.1	라. 1988. 3.21.	
마.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공 보. 관 위 원 기획담당관 " 시장개발담당관 " 유통유통기획담당관 " 행정과장 " 새마을지도과장 " 도시계획과장 " 청소과장 " 업무과장 " 관광담당관 " 소방행정과장	마. 심의위원회구성 위원장 공보관 위 원 기획담당관 " 시장개발담당관 " 유통유통관리담당관 " 관광담당관 " 문화담당관 " 행정과장 간 사. 홍보제회담당관	• 지구인실 (홍보제회 담당관) 업무실성에 맞 게 조정
바. 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수시	바. 과 동	
사. 심 의 요 청 심의요청부서에서는 제작일 토부터 30 일전에 별첨실의 요청서에 판제서류를 작성하 여 공보관에 제출	사. 과 동	
아. 제출부수 12 부	아. 제출부수 10 부	

(서식 1)

홍보물 제작심의 요청서

1. 제 명 :

2. 발간 목적 :

3. 내용요지 :

4. 제작내용 :

가. 종 별 :

나. 수 량 :

다. 규 격 :

홍 보 간 행 물		시 청 자 홍 보 물	
구 분	내 용	구 분	내 용
지 절		구 분	천연색, 흑색
지 면		소요시간	
인쇄 방법		슬라이드 수	

5. 소요예산액 :

6. 발행예정일 :

7. 배 부 계 획 :

8. 첨부: 홍보물(원)

※ 병동사항 없음.

서 울 특 별 시

울관 01756-115

(731-6181-3)

'86. 3. 28.

수 신 : 수신처장조

제 목 :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

1. 올림픽선수, 기자촌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용중인 아래 물품을 관리전환코자하니 소요회당 부서에서는 '88.4.18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바라며,

2.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.

3. 소요대상 물품

물품분류번호	참 명	규 격	단위	수 량	단 가
4520-055	대형운송기 (110-170 경)	DPH-800	대	3	1,656,330 원

장부가액	취득년월일	상 태	회 계 명	물품소재지
4,968,900원	86.12. 8	양호	올림픽사업비특별회계	올림픽관리담당관실

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올림픽준비단장 전결)

수신처:시산하 전기관

훈 령

서울특별시 공무원국의여행심사위원회
의 운영규정제정 규정을 다음과 같
이 발령한다.

1988. 3. 28

서울특별시장 김 용 령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654 호

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여행심사위원회
운 영 규 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
시 공무원국의여행심사위원회 (이하
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
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심사대상) 위원회의 심사대
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시산하 전직원 및 지방공사 임
직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
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
출장하는 경우
2. 시산하 전직원 및 지방공사 임직
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
하는 경우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공무원 국외여행
(이하 "여행"이라 한다)에 관하여
다음사항을 심사한다.

1. 여행의 필요성

2. 여행자의 적격성
3. 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
4. 여행인원의 적정성
5. 소요예산의 내역
6. 기타 사항

제 4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
부위원장,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
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
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객
무국장, 도시계획국장, 감사관, 투자
관리관, 기술직사관이 된다.

제 5 조 (위원장등) ①위원장은 위원
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
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③감사는 인사과장이 되고, 위원회
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6 조 (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의
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
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
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다만,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
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
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
한다.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
도 재적위원으로 본다.

③위원장은 여행자의 출국일이 촉
박하여 정기회의에서 심사할 수

있고 또한 입시회의를 소집하기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케 하여 편제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 2 항의 의결에 가함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심사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명으로 하여금 심사케 하고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써, 제 2 항의 의결에 가함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재심사) 관계국장이 제 8 조 제 3 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재심사요구는 1 회에 한한다.

제 8 조 (심사절차) ① 관계국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 일전까지 위원장에게 "별첨 1"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이 제 1 항의 심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여행기간 및 시기의 변경)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통보된

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기의 변경 및 3 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.

제 10 조 (서류의 보완 및 반려) ① 위원장은 제 9 조 및 제 10 조에 규정된 요청서를 심사한 후 미비된 서류를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관계인출석)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.

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 1 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첨 1)

○○ 01112-

수신 내무국장

참조 인사과장

제목 공무(사사)국의여행 심사요청

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무(사사)국의여행심사를 요청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	속	직 위 (직급)	성 명 (생년월일)	여행목적	여행국 (경유)	여행기간 (일간)	여행경비 (\$)	비 고

- 첨부 1. 공무국의여행계획서 (별지 1)
 2. 이력서 1부 (별지 2)
 3. 자료수집 계획협의 및 귀국보고서등 제출확인증 1부 (별지 3)
 4. 항공운임증명서 (대한항공 GTR부서 발행)
 5. 기타 관련문서 사본 및 사유서

(별지 1)

공무 (사 사) 국외여행계획서

1. 여행계획요약

여행목적					
여행동기 및배경					
여행기간	 (일간)				
여행국	(.)				
여행 자	성명				
	생년월일				
	소속				
	직위				
	직급				
	여행경비	₩	₩	₩	₩
여행경비 부담기관					
기타					

* 작성요령

1. 여행국의 ()는 경유국을 기재
2. 소속은 파까지 기재
3. 직급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
(예: 행정사무관·물리기좌·교정관 등)
4. 4인초과경우 별지작성

2. 여행세부계획

가. 여행목적

1)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

2) 여행하고 수행하는 세부내용(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업무)

3)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

나. 여행일정

일 자	출 발 지	도 착 지	발 문 기 관	업 무 수 행 내 용	결 속 증명인물
	서 울				
		서 울			

(별지 2)	
이 력 서	
○ 주 소 ○ 성 명 ○ 주민등록번호	
학 력	
기 간	학 교 명
경 력	
기 간	근 무 경 력
최근 3 년 간 국 외 여행 경 력	
기 간	이 력 부 록 (여 행 국)
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.	
19	

(별지3)

자료수집계획회의 및 귀국보고서등 제출확인문

1. 여행계획

소속기관	(주무부처:)		연락처 전화	동행인원 (본인포함)	성
여행자	성명	주민등록 번호	직위	직급	
여행기간	년 월 일 - 년 월 일 (일간)				
여행국	방문 기관				
여행목적					

2. 자료 수집계획

-
-
-

3.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(최근 3년이내의 재여행자에 한함)

성명	여행기간	여행목적	제출여부	
			보고서	자료

귀와 같이 확인합니다.

작성자:

①

년 월 일

정 부 기 록 보 존 소 장 (시정개발담당관)

소속기관확인	• 여행자는 굵은 선내에만 기재. • 소속기관(또는 주무부처) 인사담당자는 여행계획과 과거여행 기록을 확인하고(단, 과거여행사실이 없을 경우 3의 굵은 선 내에 "해당없음"이라 기재) 직, 성명 기재부 날인 • 5인 2부 작성후 정부기록보존소장에게 제출(총무처 공실대상외 경우) • 자체 심사 및 허가대상외 경우 1인 2부 작성 1부는 시정개발 담당관에게 제출하고, 1부는 인사과에 제출.
--------	--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13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3.28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
 2. 사업주체 : ㈜ 자유건설 김 동 진
 3.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규모
 - 가. 위 치 : 강동구천호동 287-9
 - 나. 대지면적 : 4,539㎡
 - 다. 용 도 : 연립주택
 - 라. 규 모 : 3층 4동 90세대외 부대시설
 - 마. 건축연면적 : 6,781.62㎡
 4. 사업시행기간 : 88.3-89.5
- 첨부 : 설계도서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21 호

광견병예방주사 실시

다음과 같이 광견병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.

1988. 3. 28

서울특별시장

1. 목 적 : 광견병의 발생과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
2. 지 역 : 서울특별시 전역
3. 대 상 : 판매에서 기르는 모든개 (3개월령 이상)
4. 장 소 : 인근 동물병원
5. 기 간 : 88.4.20-5.10
6. 기 타 : 본 기간중에 예방주사를 마치지 않은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다.

구 고 시

◎ 노원구고시제 6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3 호 (80.1.25) 로 시행허가된 노원구 하계동 산 16-38 일대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관련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
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8.3.28

노 원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노원구 하계동 산 16-38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명칭: 채성여자고등학교
사실확충

다. 사업규모

(단위: m²)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대 지 면 적	24,760	24,760	변 경 없 음
건 축 면 적	1,681.6	2,000.48	증 318.88
연 면 적	7,079.65	8,142.53	증 1,062.88

라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노원구
하계동 산 16-38
학교법인 채성학원
이사장 박정선

마. 사업기간

당초: 80.1.25 - 87.12.30

변경: 80.1.25 - 89. 6.30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23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고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

을 도시계획도모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 조2항 및 동시행령 제27조2 규 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. 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 3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,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 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 로 제출하기 바란다.	1988.3.28 서울특별시 가) 사업개요: 별첨 나)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 (관악구청장) 다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생략 라)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: 생략 마)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) 공람장소: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)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토목과에 문의하기 바란다.
---	--

사 업 내 역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규 모	착 공	준 공	절경고시 일 자	지적고시 일 자
관악구신림 3·동 659-5 -663, 714- 2	도시계획사업 (신림 3 동 659- 5-661-68 외 1 개소 도로개설 공사)	B=6-8 m L=230 m	88.3.15	88.12. 30	서고 제 207 호 (73.12.24)	서고 제 207 호 (73.12.24)
관악구신림 2 동 107 의 36 필지	도시계획사업 (신림 2 동 사 무소 진입로의 2 개소 도로개 설공사)	B=6-9 m L=325 m	88.3	89.2	"	"

24-18 제 1404호 시

보 1988.3.28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규모	착공	준공	정정고지 일자	지적고지 일자
판악구룡천 1동 647의 155-647의 158간	도시계획사업 (룡천 1동 647 의 158-155간 도로개설공사)	B=6m L=130m	88.3	88.11	서고제 2호 (72.1.7)	서고제 2호 (72.1.7)
판악구룡천동 697의 4-봉 천동 695의 13	도시계획사업 (당곡국교주변 도로개설공사)	B=7-8m L=130m	"	88.2	서고 제 156호 (73.9.26)	서고 제 156호 (73.9.26)
판악구선림동 587의 46- 585-82	도시계획사업 (선림 11동 587 주변도로개 설공사)	B=6m L=100m	"	88.7	서고 제 207호 (73.12.24)	서고 제 207호 (73.12.24)
241-4-236- 5.255-274- 251-151	선림 9동 241의 4-236의 5의 1개소 도로개 설공사	B=6-4m L=200m	"	88.12	서고 207 (73.12.24) 서고 282 (78.6.12)	과 등 서고 376 (78.7.27)
룡천 10동 859-10- 49-33	룡천 10동 중앙 지정 진입로 개설공사	B=6-8m L=250m	"	"	서고제 2호 (72.1.7)	서고제 2호 (72.1.7)
룡천본동 500 번지-503-3	룡천본동 500 번지 주변 도 로개설의 3개 소 도로 정비 공사	B=6m L=90m	"	"	서고 제 129호 (77.4.28)	서고 제 129호 (77.4.28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28 호

원지계획일부변경공람

1. 사업시행중에 있는 가락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원지계획을 일부변경코자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원지계획변경 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인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를 갈음한다.

1988. 3.28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: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
 나. 변경위치: 강동구 가락동, 망이동, 오금동, 건여동, 문정동, 마천동, 강제동, 이동 각일부
 다. 변경도서: 공람장소 비치도서의 참조.

구 공 고

◎구로구공고제 2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시행허가예따른공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86 호(73.12.3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시행자의 도로개설신청이 있어,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
2. 관계도서 및 토지(건물) 조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별도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8. 3.28

구로구청장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도시계획사업(도로), 경인로에
 서 운수역간 도로개설
 나. 사업시행지
 구로구운수동 41의 5 - 운수동 109
 (운수동 41의 5 외 2필지)

다. 시행규모: 폭: 8m, 연장: 34m	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조서)
라. 시행자: 시래문구복아현동221-7	사. 공람기간 '88.3.28-'88.4.11(14일간)
동건주택(가) 대표 백학기	아.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
마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조서)	자.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-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.
바. 토지 (건물)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	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 번	지 목	공부면적 (㎡)	권입면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소유권 이외 의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
은수동	41-5	도 로	1,949	104	서 울 시	
"	42-1	대	664	121	강남입구정 297현대(주) 127-702김덕래	
"	109	구	8,982	24 [㎡] .41	국 (전 설 부)	

※ 권입면적은 가분할 면적임.

건 물 조 서

소재지	지 번	종 류	구조및규격	면 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소유권 이외 의권리명세
은수동	42-1	공장및 사무실	스래트부리조 (지상1층)	295	강남구입구정동 297 현대(주) 127-702 김덕래	

○노원구공고제 68 호 판 인 신 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민투표 및 선거용 구청장 직인을 신조하였		기 준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함. 1988. 3. 28 노 원 구 청 장 ○ 사 용 일 시 : 1988. 3. 28 ○ 신조판인인명 :	
인 영			
무인영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1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2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3)
인 영			
무인영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4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5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6)
인 영			
무인영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7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8)	노원구청장직인 (국민투표선거용 9)

사 령

◎ 1988년 3월 22 일자

명제 89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김용준	지출계장에 점입함.	회계과	관리계장	지방행정사무관

◎ 1988년 3월 24 일자

명제 91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이재덕	박도수원처사무소	대헌산배수지사무소		지방행정직 7급상당

◎ 1988년 3월 25 일자

명제 92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최수근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거 전채에 직함.	강동구	지방전축기원보	
유금홍	불문경고 (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 원회 의결사항)	충로구	지방임업기과	

◎ 1988년 3월 31 일자

명제 93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이상원	강남구파견 (88.4.1-88.6.30)	동작구	지방임업기원	

◎ 1988년 3월 28 일자

명제 94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정경표	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3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로 감입함. 강서구 근무를 명함.	경남 남해군	지방행정주사보	

제 1404 호

시

보

1988.3.28 24-23

령제 95 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김진용	서울특별시 진입원 영합. 지방공무원법 제 55 조의 3 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로 강입함. 도봉구 근무를 영함.	전북 무주군	지방행정주사
◎ 1988 년 3 월 25 일자			
령제 96 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준년	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과장 (88.3.25-88.4.30)	총로구	지방행정서기
남기정	"	동대문구	"
심상환	"	구로구	"
조남택	"	관악구	"
령제 97 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가형	공보관	마포구 수도관리과	지방행정주사보
손광호	운영과 (서초민방위교육장)	은평구 세무1과	"
유진복	" (")	관악구 산업과	지방행정서기
이석철	" (")	성북구 민방위과	"
서울특별시경			
◎ 1988 년 3 월 24 일자			
령제 98 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손중수	서기보에 입함.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실 문서담당관에 보함.	서울특별시 내무국	지방서기관

24-24 제 1404 호

시

보

1988.3.28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정리	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 총무담당관에 보함.	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실 통제담당관	서기
◎1988년 3월 23일 령제 99호			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김완중	이사관에 임함.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보함.	서울특별시	지참이사관
이영화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	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	이사관
내 록			